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2년 3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II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5,886억 3,500만원 보다 0.5%, 506억 2,800만원을 증액한 10조 6,392억 6,3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재 원 구 분	
		증 감 액 (C)	증 감 륜 (C/B)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10,639,263	10,588,635	50,628	0.5	50,628	-

-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일반재원) 506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22년 2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예정교부시 유보된 3,945억 5,800만원 중 12.8%, 506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506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육사업비** 중 ①학교보건관리 400억원, ②유아교육운영 40억 7,800만원, ③사립유치원지원 40억 5,000만원, ④교육복지우선지원 25억원을 증액하여 총 506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을 기정예산(6조 665억 1,100만원)보다 0.8%, 506억 2,800만원 증액한 6조 1,171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3-1〉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117,140	6,066,511	50,628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71,437	5,520,809	50,628	0.9
	보통교부금	5,302,602	5,251,973	50,628	1.0
	특별교부금	106,518	106,518	-	-
	증액교부금	162,317	162,317	-	-
국고보조금		23,327	23,327	-	-
특별회계전입금		522,374	522,374	-	-

- 지난 2월,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정산하여 보통교부금 3,945억 5,800만원을 확정교부하여 당초 기정예산액(5조 2,519억 7,300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학기 **학교 등 방역**

안전망 구축 긴급지원을 위해 보통교부금 증액분 3,945억 5,800만원 중 12.8%, 506억 2,800만원을 우선적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한 것임

〈표 3-2〉 2022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정 예 산 액 (예 정 교 부 액)	추 가 교 부 금			추 경 예 산 안
	계	금 회 추 경 액 증 감	이 후 추 경 반 영 예 정 액	
5,251,973	394,558	50,628	343,930 <sup>주1)</sup>	5,302,602
	(100.0)	(12,8)	(87.2)	

※ 주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통교부금 3,439억 3,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할 예정임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 '22년 2월, 교육부의 확정 교부통지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증액분(3,945억 5,8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일부(12.8%)를 금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적절한 편성사례가 아닐 수 있어 향후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 서울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긴급 지원사업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

○ 서울혁신교육지구 교육공동체 긴급 지원사업(참여협력담당관)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 2022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 예산 (A+B)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706	2,500	16,206

- 동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재원을 안분하여 추진하였으나, '22년도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20%, △25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자치구와의 교육협력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25개 자치구에 각1억원씩 2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 2021~2022년도 서울시분담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내 역)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증 감 액 (A - B)	2022년 예 산 (A)	2021년 예 산 (B)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혁신교육지구운영(25개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	10,000 <sup>주1)</sup> (구당 평균 4억원)	12,500 <sup>주2)</sup> (구당 평균 5억원)

※ 주1) 서울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서」, p.969

주2) 서울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서」, p.967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동 조례로 정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 바, '22년도의 경우,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감액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부족 예산 25억원을 추경안을 통해 편성 요청한 것이나,

- 교육재정의 한정성과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원활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소요 예산이 부족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는 '22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의 감액 편성 사유를 사업 중복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도 사업의 성과 향상 및 보조율 근거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유아교육교육력제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1)

○ **유아교육교육력제고**(유아교육과)는 유치원내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소그룹 분반수업 등으로 원내 유아 밀집도를 완화하고, 교사 확진 시 즉각적인 대체가 가능하도록 공립유치원에 수업지원강사를 배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중 40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공립유치원 중 전체 정원대비 충원률 60%를 초과하는 206개 원은 시간강사 1명 인건비(1,625만원)를 지원하고, 충원률 60%미만인 86개 원은 2~3개원씩 묶어 중심유치원에 시간강사 1명분 인건비(1,625만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표 4-3〉 유치원수업지원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산 출 내 역
유치원수업지원	4,078	0	4,078	· 16,250천원×251명

- 다만, 제출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추경사유를 ①유치원내 밀집도 조정, ②확진자 발생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 호소로 인하여 ③수업지원강사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원아와 교직원을 구분한 유치원내 신규확진자에 대해 구체적 자료나 공·사립별 현황 등을 첨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추경사유를 제시한 것은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4)

○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유아교육과)은 유치원내 확진자 급증으로 원아별 원격수업지원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추가 준비하는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운영비 4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당 운영비 지원액은 '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30만원을 기준액으로 한 것이나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학급운영비 지원 기준액을 48만원으로 전달한 바, 기정예산 중 학급운영비 기준액과 18만원 차이가 있어 추경안을 통해 교육부 기준액에 맞추어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표 4-4〉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학급 운영비	13,050	9,000	4,050	· 180,000×2,500학급×9월 (490개원, 2,500학급)

- '22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이미 교육부의 학급운영비 지원기준액이 전달되어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교육청은 1학급당 30만원의 학급운영비 지원외에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기여도에 따라 학급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어, 차등지원액을 포함할 경우, 교육부의 지원기준단가를 상회하여 지원받는 유치원이 발생되어 교육부의 기준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8월 기준액을 전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부담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에도 본예산안 편성과정 중 산입할 수 있었던 증액분을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것은 교육일선의 위기를 외면한 결과일 수 밖에 없어 향후 유사한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놀이꾸러미 등 원격 수업용 교재·교구 추가 구입 등을 위해 학급별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재정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설명서를 사실 그대로 기술하여 차후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감염병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1)

- **학교감염병관리**(체육건강문화예술과) 중 **방역활동강화**는 기정예산 565억 9,700만원보다 4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4월부터 10주간 주당 1~2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기 위해 4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5〉 방역활동강화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합 계	96,597	56,597	40,000	
신속항원검사도구구입	40,000	-	40,000	·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비 (4,000원×25명×40,000학급×10주)
학교방역비지원	56,597	56,597	-	· 방역인력인건비, 물품구입비, 소독비 등

- 동 사업은 지난 2월, 교육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선제검사 및 확진자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①사업부서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및 서울시교육청의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72억원을 기집행하였으나, ②4월부터는 금번 추경안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400억원과 추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될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인 바,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원은 ①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는 「2022년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3:7로 분담되며 ②4월 이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3:7로 재원을 분담할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금번 추경안에는 4월 이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하지 않고, 사업부서의 추계를 근거로 자체예산 400억원만 증액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특별교부금을 금번 추경안 중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특별교부금 미편성사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V.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관련 법령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서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우리 위원회는 현행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상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회계연도 중 예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성과계획서 등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예산서와 성과계획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 마련과 절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VI. 참고자료

## 1.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금 액	비 율		증 감 액	비 율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10,639,264	100	10,588,635	50,629	0.5	50,629	-	-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 통 교 부 금	5,302,603	49.9	5,251,974	50,629	1.0	50,629	-	-	
	특 별 교 부 금	106,518	1.0	106,518	-	-	-	-	-	
	증 액 교 부 금	162,317	1.5	162,317	-	-	-	-	-	
	국 고 보 조 금	23,328	0.2	23,328	-	-	-	-	-	
	특별회계전입금	522,375	4.9	522,375	-	-	-	-	-	
	계	6,117,141	57.5	6,066,512	50,629	0.8	50,629	-	-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 정	지 방 교 육 세	1,966,277	18.5	1,966,277	-	-	-	-	-
		담 배 소 비 세	257,189	2.4	257,189	-	-	-	-	-
		시 도 세	1,662,994	15.6	1,662,994	-	-	-	-	-
		학교용지부담금	1,995	0.1	1,995	-	-	-	-	-
		교부금보전금	96,595	0.9	96,595	-	-	-	-	-
		교육급여보조금	9,652	0.1	9,652	-	-	-	-	-
		무상교육경전입금	15,034	0.1	15,034	-	-	-	-	-
		소 계	4,009,736	37.7	4,009,736	-	-	-	-	-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44,605	0.4	44,605	-	-	-	-	-
		기초자치단체	12,792	0.1	12,792	-	-	-	-	-
		소 계	57,397	0.5	57,397	-	-	-	-	-
	계	4,067,133	38.2	4,067,133	-	-	-	-	-	
	기타이전수입(지원금)		8,732	0.1	8,732	-	-	-	-	-
자치 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464	0.1	1,464	-	-	-	-	-	
	행정활동수입	4,718	0.1	4,718	-	-	-	-	-	
	자 산 수 입	7,519	0.1	7,519	-	-	-	-	-	
	이 자 수 입	5,607	0.1	5,607	-	-	-	-	-	
	기 타 수 입	92,704	0.7	92,704	-	-	-	-	-	
	계	112,012	1.1	112,012	-	-	-	-	-	
지 방 채		-	-	-	-	-	-	-	-	
기 타	전년도이월금	324,342	3.0	324,342	-	-	-	-	-	
	금융자산회수	9,904	0.1	9,904	-	-	-	-	-	
	계	334,246	3.1	334,246	-	-	-	-	-	

##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률	일차 일반	목적 우선 확정	지정 추경 경성
합	계	10,639,264	100.0	10,588,635	100.0	50,629	0.5	50,629	-	-
유아 및 초 등 교육 부	계	5,012,037	47.1	4,961,408	46.9	50,629	1.0	50,629	-	-
	인적자원운용	62,948	0.6	62,948	0.6	-	-	-	-	-
	교수학습활동지원	591,293	5.6	583,164	5.5	8,129	1.4	8,129	-	-
	교육복지	804,430	7.6	801,930	7.6	2,500	0.3	2,500	-	-
	보건급식	729,932	6.9	689,932	6.5	40,000	5.8	40,000	-	-
	학교재정지원관리	2,154,200	20.2	2,154,200	20.3	-	-	-	-	-
	학교시설여건개선	669,234	6.3	669,234	6.3	-	-	-	-	-
평생교육		33,373	0.3	33,373	0.3	-	-	-	-	-
교육 일반	계	329,894	3.1	329,894	3.1	-	-	-	-	-
	교육행정일반	151,977	1.4	151,977	1.4	-	-	-	-	-
	기관운영	47,302	0.4	47,302	0.4	-	-	-	-	-
	재무활동	130,614	1.2	130,614	1.2	-	-	-	-	-
예비비및기타		10,089	0.1	10,089	0.1	-	-	-	-	-
인건비		5,253,872	49.4	5,253,872	49.6	-	-	-	-	-

###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일반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성
합계	10,639,264	100.0	10,588,635	100.0	50,629	0.5	50,629		
인건비	계	6,528,379	61.4	6,528,379	61.7	-	-	-	-
	공무원	4,427,567	41.6	4,427,567	41.8	-	-	-	-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826,305	7.8	826,305	7.8	-	-	-	-
	사립학교	1,274,507	12.0	1,274,507	12.0	-	-	-	-
경상비	계	912,692	8.6	912,692	8.6	-	-	-	-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33,000	0.3	33,000	0.3	-	-	-	-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879,692	8.3	879,692	8.3	-	-	-	-
사업비	계	3,057,490	28.7	3,006,861	28.4	50,629	1.7	50,629	-
	교육사업비	2,312,866	21.7	2,262,237	21.4	50,629	2.2	50,629	-
	시설사업비	744,624	7.0	744,624	7.0	-	-	-	-
재무활동	계	130,614	1.2	130,614	1.2	-	-	-	-
	지방채상환 등	52	0.0	52	0.0	-	-	-	-
	BTL 상환	102,393	1.0	102,393	1.0	-	-	-	-
	기금전출금	28,169	0.3	28,169	0.3	-	-	-	-
예비비 및 기타	10,089	0.1	10,089	0.1	-	-	-	-	

### 4. 일반재원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주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세부항목)	증감액
합계	( 4 건 )			50,629
1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우선지원	혁신교육지구운영	2,500
2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운영	유아교육교육력제고	4,079
3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4,050
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관리	학교감염병관리	40,000